

의안번호	제 466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2월 일 (제286회)

**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0년 1월 2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6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1월 29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난 1. 25.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되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
- 지역선거구별 의원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법 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상하 60% 범위내로 조정

2. 주요내용

-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: 131명(현행과 같음)

구분	계	청주	충주	제천	청원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계	131	26	19	13	12	8	8	8	7	7	8	8	7
비례	17	3	2	2	2	1	1	1	1	1	1	1	1
지역	114	23	17	11	10	7	7	7	6	6	7	7	6

- 시·군의회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(별표 2)
- 시·군의 지역선거구별 의원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최소 40%, 최대 160% 범위내 선거구 획정
-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최소화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증평균 증평읍 일부를 분할하여 도안면 선거구로 획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- 공직선거법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부칙
-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, 부칙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공직선거법」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공직선거법」 제26조제2항, 같은 법 부칙 제4조3항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부칙 제3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2]

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 <제3조 관련>

구 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충청북도	합계	114	46개 선거구	154
청주시	소계	23	9개 선거구	30
	청주시 “가”선거구	3	우암동, 내덕제1동, 내덕제2동, 율량·사천동, 오근장동	5
	청주시 “나”선거구	3	중앙동, 성안동, 탑·대성동, 금천동, 용담·명암·산성동	5
	청주시 “다”선거구	3	용암제1동, 용암제2동, 영운동	3
	청주시 “라”선거구	3	분평동, 수곡제1동, 수곡제2동	3
	청주시 “마”선거구	2	모충동, 사직제1동, 사직제2동, 사창동	4
	청주시 “바”선거구	2	성화·개신·죽림동, 산남동	2
	청주시 “사”선거구	2	복대제1동, 복대제2동	2
	청주시 “아”선거구	3	가경동, 강서제1동	2
	청주시 “자”선거구	2	강서제2동, 봉명제1동, 봉명제2·송정동, 운천·신봉동	4

시·군·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충주시	소계	17	7개 선거구	25
	충주시 “가”선거구	2	양성면, 노은면, 가금면, 신니면	4
	충주시 “나”선거구	2	주덕읍, 이류면, 살미면, 수안보면	4
	충주시 “다”선거구	3	달천동, 호암·직동, 지현동, 용산동	4
	충주시 “라”선거구	2	엄정면, 산척면, 동량면, 금가면, 소태면	5
	충주시 “마”선거구	2	목행·용탄동, 칠금·금능동	2
	충주시 “바”선거구	2	봉방동, 문화동, 성내·충인동	3
	충주시 “사”선거구	4	연수동, 교현·안림동, 교현 2동	3
제천시	소계	11	5개 선거구	17
	제천시 “가”선거구	2	봉양읍, 백운면, 송학면	3
	제천시 “나”선거구	2	고암·모산동, 청전동	2
	제천시 “다”선거구	2	중앙·의림·명동, 용두동, 서부·영천동	3
	제천시 “라”선거구	2	금성면, 청풍면, 수산면, 덕산면, 한수면, 화산동	6
	제천시 “마”선거구	3	교동, 남천·동현동, 신백·두학동	3

시·군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청원군	소계	10	4개 선거구	14
	청원군 “가”선거구	2	낭성면, 미월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	5
	청원군 “나”선거구	3	남이면, 현도면, 부용면, 강내면, 강외면	5
	청원군 “다”선거구	2	내수읍, 북이면	2
	청원군 “라”선거구	3	오창읍, 옥산면	2
보은군	소계	7	3개 선거구	11
	보은군 “가”선거구	2	보은읍	1
	보은군 “나”선거구	2	속리산면, 장안면, 마로면, 탄부면	4
	보은군 “다”선거구	3	삼승면, 수한면, 회남면, 회인면, 내북면, 산외면	6
옥천군	소계	7	3개 선거구	9
	옥천군 “가”선거구	3	옥천읍	1
	옥천군 “나”선거구	2	동이면, 이원면, 군서면, 군북면	4
	옥천군 “다”선거구	2	안남면, 안내면, 청성면, 청산면	4

시·군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영동군	소계	7	3개 선거구	11
	영동군 “가”선거구	3	영동읍, 양강면, 학산면	3
	영동군 “나”선거구	2	용산면, 심천면, 양산면	3
	영동군 “다”선거구	2	황간면, 추풍령면, 매곡면, 상촌면, 용화면	5
증평군	소계	6	2개 선거구	2
	증평군 “가”선거구	4	증평읍 (연탄리, 송산리, 미암리, 사곡리 제외)	1
	증평군 “나”선거구	2	도안면 (증평읍 연탄리, 송산리, 미암리, 사곡리 포함)	1
진천군	소계	6	2개 선거구	7
	진천군 “가”선거구	3	진천읍, 문백면, 백곡면	3
	진천군 “나”선거구	3	덕산면, 초평면, 이월면, 광혜원면	4
괴산군	소계	7	3개 선거구	11
	괴산군 “가”선거구	3	괴산읍, 칠성면, 소수면, 문광면	4
	괴산군 “나”선거구	2	감물면, 장연면, 연풍면, 불정면	4
	괴산군 “다”선거구	2	청천면, 청안면, 사리면	3

시·군별	지역구명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음성군	소계	7	3개 선거구	9
	음성군 “가”선거구	3	음성읍, 소이면, 원남면, 맹동면	4
	음성군 “나”선거구	2	금왕읍, 생극면, 감곡면	3
	음성군 “다”선거구	2	대소면, 삼성면	2
단양군	소계	6	2개 선거구	8
	단양군 “가”선거구	3	단양읍, 대강면, 적성면, 단성면	4
	단양군 “나”선거구	3	매포읍, 가곡면, 영춘면, 어상천면	4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<본문생략>	제1조 (현행과 같음)
제2조 <본문생략>	제2조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) 「공직선거법」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.	제3조(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) 「공직선거법」 제26조제2항, 같은 법 부칙 제4조3항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【공직선거법】
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3과 같이하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②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.

③비례대표 자치구·시·군의의원정수는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

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·시·군의의원 지역선거구(이하 “자치구·시·군의의원지역구”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, 시·도에 자치구·시·군의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.

② “생략”(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
③자치구·시·군의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와 시·도의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.

④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(이하 “선거구획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일비·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

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,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,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생략(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
⑨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, 시·도 의회가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 ①생략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
②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다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·면(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동(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.

④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확정하여야

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3제3항, 제93조 제2항, 제108조제3항제4호,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, 제 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·시·군은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.

【공직선거법시행령】

제2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「공직선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

구성하되, 위원은 시·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원회는 시·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위원장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⑦위원에게는 당해 시·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시·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.

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【공직선거관리규칙】

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) ①법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1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·시·군별 인구 비율과 읍·면·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·면·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.
2.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“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”이라 한다)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, 지역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“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”이라 한다)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.
②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·시·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3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·시·군”이란 강원도 동해시, 충청북도 증평군, 경상남도 김해시·거창군을 말한다.